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79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론 종결2024. 9. 11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I 답 909m² 중, 피고 B은 91/156 지분, 피고 C은 15/156 지분, 피고 D, E, F, G, H는 각 10/156 지분에 관하여 각 2007. 4. 1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나머지 피고들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불출석으로 인한
자백간주 판결)

판사노연주

별지